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8월 29일

나. 발 의 자 : 박미영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9.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 기금 사용(안 제7조)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운영(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 인턴취업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¹⁾은 2016년 4월 기준으로 190만 6천명이며, 이 중 서울시는 35만 1천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에 위하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²⁾ 등 경력단절 여성의

1) 통계청 「2016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만 15~5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4.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연구」

재취업 욕구는 매우 높은 편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경력단절여성등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개인의 인적특성, 희망 업종 및 직종 등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9일

발의자 : 박미영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우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 기금 사용(안 제7조)

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운영(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7. 27. ~ 8. 4.)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